

#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행정정보공표 현황 분석

## An analysis on the Public Information Dissemination from a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Perspective

김혜원,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wony19@hansung.ac.kr

정경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khjoung@hansung.ac.kr

Hye-Won KIM,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Hansung University

Kyung-Hee JOUNG, Division of Knowledge & Information, Hansung University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 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1. 서론

행정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행정정보공표와 관련된 조항은 2004년에 신설되었으며, 2011년에 행정정보공표 대상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단순공개에 그치고 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공표를 위해서는 행정정보공표 목록을 사전에 고시하고,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시스

템’(www.open.go.kr)에서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 공공기관에서 공표한 정보가 원활하게 검색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정보공표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7개 부를 대상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둘째,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셋째,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기록정보서비스와 행정정보공표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록의 접근을 위해 서비스와 시설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관과 소장기록을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김지현 2013) 기록정보서

비스는 보존기록에 대해 검색 및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활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용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현용기록에 대한 기록물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2004년 「정보공개법」에 행정정보공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단순 청구에 의한 공개만을 다루었다면, 도입 후에는 이용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정정보를 단순 공개하는데 그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파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 2.2 행정정보공표제도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는 행정정보공표 대상정보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7조 1항에는 사전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전공표 대상정보는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가지로 명시하였다. 공표방법에 대해서는 1)정보공개에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2)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 2항에는 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전공표 대상정보를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공개대상 정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하도록 정한 정보 4)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그밖에 공공기관이 정하는 정보로 구체화 시켰다.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또한 공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 이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는 (현,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발간하고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공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 2.3 행정정보공표와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는 행정정보공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공개법」에서는 ‘행정정보공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운영매뉴얼』과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는 이 제도를 ‘사전정보공개’ 명칭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정보공표’를 기준으로 하되, 현황 분석이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전정보공개’와 ‘행정정보공표’ 명칭을 같이 사용하였다.

## 3. 행정정보공표 현황 분석

### 3.1 조사방법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행정정보공표 현황을 조사하였다. 첫째, 각 기관에서는 사전에 행정정보공표를 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 내부의 정보공개 운영규정 및 지침을 통해 제공여부를 조사하였다. 둘째, 사전에 행정정보를 공표한대로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지, 공개하는데 있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내부규정 및 지침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는 통일된 메뉴구성을 위해서 ‘사전정보공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정보공개’의 메뉴구성을 상위메뉴는 ‘정보공개’로 두고 하위메뉴에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로 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이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원문정보로 링크가 가능한지, 링크연결 경로가 각 기관마다 동일한지, 또한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사전정보공개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17개 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신설 부서이므로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15개 부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표 1> 참고.

### 3.2 분석결과

첫째, 내부규정 및 지침에 행정정보공표의 목록을 통해 행정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공표한 기관은 15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다섯 곳이었다. 다른 기관은 규정 및 지침에 관련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을 규정 및 지침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5개의 기관만이 반영했다. 하지만 운영 및 지침의 조항에 반영했을 뿐,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행정정보공표를 명시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1곳 뿐 이었다.

둘째, 행정정보공표를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사전정보공개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표의 기준은 내부규정 및 지침과 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내부 규정 및 지침에는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웹사이트의 사전정보공개 목록에서는 그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표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1곳 이었다. 법무부의 경우는 규정 및 지침에는 사전공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목록과는 차이가 있어서 규정대로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정보공개’ 메뉴의 명칭도 ‘대상 목록’, ‘사전정보공표’로 다양했다. 『정보공개 운영매뉴얼』에서 권장하는 메뉴구성을 그대로 지키는 곳은 기획재정부 한 곳이었다. 환

경부의 경우는 사전정보공개 메뉴가 정보공개 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법령/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접근하는데 어려웠다.

셋째, 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원문정보로 링크연결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링크페이지의 정보 제공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시행령 제4조 1항5호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았다. 통일부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링크페이지가 정보목록 제공 페이지와 같이 있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는 목록만 공표하고 있고, 링크 연결은 제공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링크페이지가 2012년 10월분으로 연결이 되어서, 다시 목록을 클릭해야 업무추진비의 월별 목록 페이지로 갈 수 있었다. 그 외의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은 정보공개에 주기와 시기를 공표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전정보공개검색이 가능하지만 2012년 10월 26일자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검색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접근을 다양화시켰다.

### 4. 문제점

행정정보공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사전에 운영규정 및 지침을 통해 행정정보공표를 하는 기관이 5개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표를 하고 있어도 웹사이트에 반영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인 행정정보공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전정보공개 범위와 메뉴 구성의 통일성이 없어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다. 특히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할 때 제도의 의미가 충분히 구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문으로의 링크연결의 항목이 다르고, 기관 홈페이지에서의 검색

과 ‘정보공개시스템’에서의 통합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결론

행정정보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15개 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분석결과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미흡하고 원문정보로의 링크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접근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기관은 내부규정과 지침에 행정정보공표목록을 사전에 고시하여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통일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3.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김지현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경기: 아세아문화사.  
 양정봉 (2006). 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은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147-200.  
 임진수 (2005).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표기준 분석.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 (2011). 정보공개운영매뉴얼. 행정안전부.

<표 1> 사전정보공개 현황 분석

조사 내용	항목	법 요구		웹사이트 행정정보공표 제공 형식				원문정보의 접근 방법			
	근거	법 제7조1항	시행령 제4조	공표내용준수여부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1)		정보로의 접근이 쉽게 가능한가			
내용	규정/지침에 행정정보공표 규정여부	개정 시행령 반영여부	웹사이트 '사전정보공개'의 기준	범위,주기, 시기,방법을 공표	명칭사용	메뉴 구성 통일	링크 연결 여부	링크 연결 경로	링크페이지의 정보 적합성	검색 제공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	X	운영규정	○	사전정보공개	○	○	이동	○	X
	교육부	X	X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사전정보공개	·△	○	공개방법	○	X
	외교부	X	X	정보공개법	○	사전공개	·△	○	방법	○	X
	통일부	X	X	업무별 분류제공	○	사전공표대상 목록	·△	○	공개위치	X	X
	법무부	○	X	정보공개법	○	사전정보공표	·△	○	공표위치	X	X
	국방부	○	X	정보공개법	○	사전정보공개	X	○	세부업무	○	X
	안전행정부	X	X	정보공개법	○	사전정보공개	·△	○	내용	○	X
	문화체육관광부	X	○	운영규정	○	사전정보공개	·△	○	공개위치	X	X
	농림축산식품부	X	○	정보공개법	○	사전정보공표	·△	X	X	X	X
	산업통상자원부	○	X	운영지침	○	사전정보공개	·△	○	세부업무	X	X
	보건복지부	X	○	정보공개법	○	사전정보공개	·△	○	공개내용	X	X
	환경부	X	X	운영규정	○	사전정보공표	·△	○	비고	○	X
	고용노동부	○	○	운영규정	○	사전정보공표 목록	X	○	공개범위	X	X
	여성가족부	X	○	정보공개법	○	사전공표대상 목록	·△	○	공개방법	○	X
국토교통부	X	X	시행령	○	사전정보공개	·△	○	공표항목	○	○	